제14조의7(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)

① 임대사업자는 <u>제14조의4</u> 및 <u>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(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<u>제14조의3</u>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<u>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.</u>

〈개정 2019. 10. 29., 2023. 11. 20.〉

1.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

- 2. 입주지정기간 개시일
- ② 임대사업자는 <u>법 제43조</u>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<u>제14조의4</u> 및 <u>제14조의6</u>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<mark>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</mark>. 다만,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<u>별표 1</u>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 〈개정 2019. 10. 29.〉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제1조의2제3호가목</u>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19. 10. 29.〉